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사업 추진
근거 규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등〉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86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2208386)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3
IV. 검토의견	5
1.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구성 체계	5
2. 총괄 검토의견	12
3. 관계기관 의견	14
가. 국토교통부	14
나. 국방부	15
4. 조문별 검토	17
가. 목적, 정의 및 기본방향(안 제1조 ~ 제3조)	17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21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계획과의 관계(안 제5조 및 제6조)	22
라.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안 제7조)	24
마. 시행자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안 제8조 및 제9조)	27
바. 인허가등의 의제(안 제10조)	30
사. 주변개발예정지역(안 제11조)	36
아. 주변지역지원사업(안 제12조)	38
자. 추진단 및 협의기구(안 제13조 및 제14조)	43

차. 재정 지원 및 부담금 감면(안 제15조 및 제16조)	46
카. 민간자본 유치 및 지원(안 제17조 및 제18조)	48
타. 지역기업의 우대 및 지역주민의 우선고용(안 제19조 및 제20조) ...	50
파. 특례(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52
하. 보칙(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59
거. 벌칙 및 부칙(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부칙 제1조 및 제2조)	66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220838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재봉의원 등 29인
2. 제 안 일 : 2025. 2. 24.
3. 회 부 일 : 2025. 2. 25.

II. 제안이유

청주국제공항은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간 비행장 사용협정」에 따라 군비행장 활주로와 여객터미널·계류장·주차장 등 민간항공기 전용시설을 이용하여 취항하고 있으나, 활주로는 민간항공기 전용시설이 없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비행장 활주로의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을 배정받아 민간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충청권·서울·동남권·경기·남부권의 첨단산업 물류와 약 1,400만명 배후이용객을 보유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은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민군 겸용 활주로 1본만으로는 더 이상 국제노선 확대가 불가하여 청주국제공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중부권 거

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공항시설법」 제2조 제7호 및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은 반드시 확충해야 하며 무엇보다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은 매우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로 중·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해지고 국제노선이 확대되면 현재 전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하는 이용객의 이동비용과 약 99%의 항공물류 이동비용이 매우 절감되어 국민 생활과 물류·산업 부분에서 느끼는 경제적 체감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더불어 수도권·지방광역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항공·교통 등 핵심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의 초광역권 특별지자체인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맞아 충청권역·경기남부권역 등 중부권을 아우르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항공교통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의 기능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공항 항공수요가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청주국제공항을 확장하여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등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절차, 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군비행장 활주로나 분리된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건설하여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공항 기능을 수행하여 수도권 집중완화 및 중부권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성함(안 제3조).
-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라.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시행자,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마.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 택지 조성 등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바.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추진단을 두고,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 등과 협의기구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부담금 등의 감면, 민간자본 유치 및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그 밖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Ⅳ.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구성 체계

청주국제공항은 충청북도 청주시 내수읍 일원에 위치한 공항으로, 군용 비행장과 공용 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두 개의 활주로 중 하나는 민·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하나는 군 전용 활주로로 활용되고 있음.

【 청주국제공항 개요 】

위 치 도	청주국제공항	
	●위치	충북 청주시 내수읍 일원
	●면적	(부지) 1,909,645㎡ (여객터미널) - 국내: 13,644㎡ - 국제: 16,282㎡
	●활주로	총 2본 - 2,744m×60m/민·군겸용 - 2,744m×45m/군전용

자료 : 국토교통부

한편, 지난 2024년 11월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수가 1997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400만명을 돌파하였음.

【 청주국제공항 이용현황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5.3월
운항(편)	15,683	18,648	13,625	17,425	18,516	22,547	28,387	5,875
여객 (명)	국내	2,135,560	2,513,438	1,922,752	2,628,257	3,172,099	3,173,779	3,110,536
	국제	318,089	495,613	48,111	-	2,550	522,033	1,468,685
	합계	2,453,649	3,009,051	1,970,863	2,628,257	3,174,649	3,695,812	4,579,221

자료 : 국토교통부

특히, 국제여객의 경우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수요 예측[(낙관)'25년 52만명, '35년 92만명] 대비 급격히 증가('24년 약 147만명)했음.

【 청주공항 여객수요 전망 <기본 시나리오 - 낙관(S1)> 】

(단위 : 만명)

구분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청주	국내	316	330	340	352	359	369
	국제	52	73	92	117	147	181
	소계	368	403	432	469	506	550

자료 : 국토교통부

또한, 청주국제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¹⁾에 따르면 슬롯(항공기 이착륙 허용능력²⁾) 활용률 또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2035년이면 주요시간대 민간항공기 슬롯이 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1) 충청북도, 청주대학교, (주)한솔엔지니어링글로벌

2) 항공정보포털 용어사전(<https://www.airportal.go.kr/library/ebookDictionary.do>)

이에 청주국제공항에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신설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정안은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인·허가 의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명으로 본칙 5개의 장 34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 분	조 문	규 정 사 항
본 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방향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및 지원 등	
	제7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제8조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시행자
	제9조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제10조	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11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
	제12조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제13조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추진단
	제14조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제3장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위한 지원	
	제15조	재정 지원
	제16조	부담금 등의 감면 등
	제17조	민간자본 유치

구 분	조 문	규 정 사 항
	제18조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제19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20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21조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제22조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제2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4장 보칙	
	제24조	권한의 위임
	제25조	출입·검사 등
	제26조	시정명령 등
	제27조	허가 등의 취소
	제28조	과징금의 부과
	제29조	청문
	제5장 벌칙	
	제30조	명령 등의 위반 죄
	제31조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32조	업무방해 죄
	제33조	제지·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34조	양벌규정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제정안은 조문 구조 및 내용이 전반적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법」”이라 함) 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이라 함)과 유사함.

【제정안과 가덕도신공항법 ·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간 구성 체계 비교】

구 분	제정안		가덕도신공항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조 문	규정사항	조 문	규정사항	조 문	규정사항
본 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방향	제3조	기본방향	제3조	기본방향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및 지원 등		제2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제2장 통합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제7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제7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제7조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	-	제8조	가 덕 도 신 공 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
	-	-	제8조의2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	-
	제8조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시행자	제9조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제8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	-	제9조의2	종합적 사업관리	-	-
	제9조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제9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	-	-	-	제9조의2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제10조	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11조	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10조	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11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	제12조	주변지역개발사업	제11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
	제12조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	-	-	-
	제13조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추진단	제13조	신공항건설추진단	제12조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제14조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	-	제13조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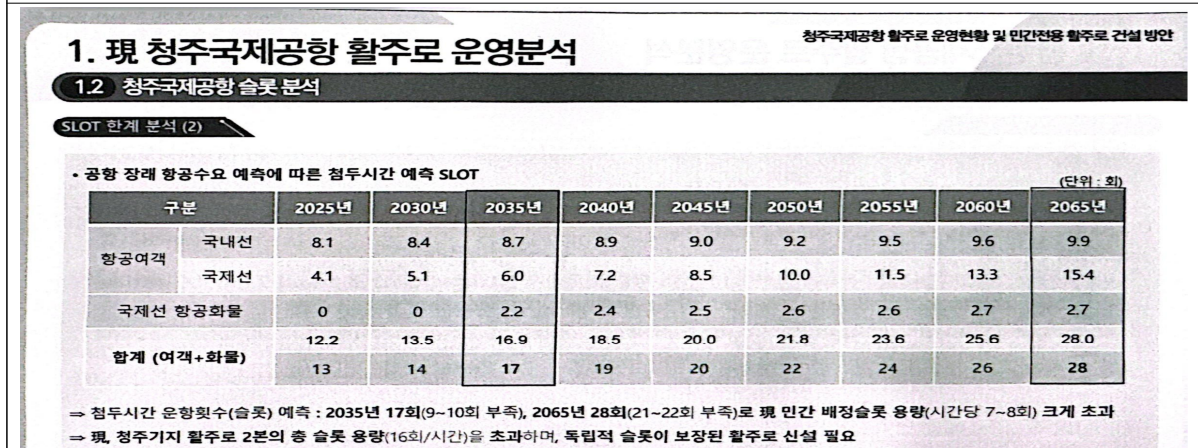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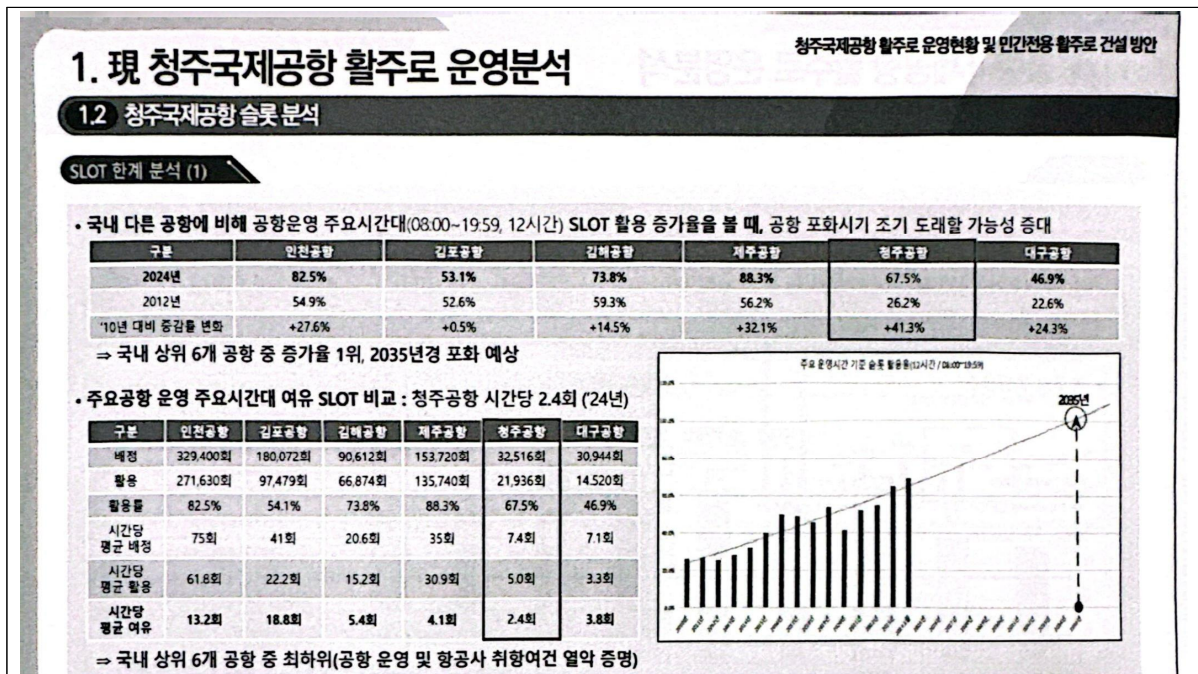
구 분	제정안		가덕도신공항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조 문	규정사항	조 문	규정사항	조 문	규정사항
	-	-	-	-	제3장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3장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위한 지원		-	-	제4장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제15조	재정 지원	제14조	재정 지원	제20조	정부의 재정 지원
	제16조	부담금 등의 감면 등	제15조	부담금 등의 감면 등	제21조	부담금의 감면 등
	제17조	민간자본 유치	제16조	민간자본 유치	제22조	민간자본 유치
	제18조	민간자본 유치 사업의 지원	제17조	민간자본 유치 사업의 지원	제23조	민간자본 유치 사업의 지원
	-	-	-	-	제24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제19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18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25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20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	-	제26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21조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	-	-	-
	제22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19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27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23조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	-	제28조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	-	-	-	제29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	-	-	-	제29조의2	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	-	-	-	제30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4장 보칙		제3장 보칙		제5장 보칙	
	제24조	권한의 위임	제20조	권한의 위임	제31조	권한의 위임
	제25조	출입·검사 등	제21조	출입·검사 등	제32조	보고·검사 등
	제26조	시정명령 등	제22조	시정명령 등	제33조	시정명령 등
	제27조	허가 등의 취소	제23조	허가 등의 취소	제34조	허가 등의 취소
	제28조	과징금의 부과	제24조	과징금의 부과	제35조	과징금의 부과
	제29조	청문	제25조	청문	제36조	청문
	제5장 벌칙		제4장 벌칙		제6장 벌칙	
	제30조	명령 등의 위반 죄	제26조	명령 등의 위반 죄	제37조	명령 등의 위반 죄
	제31조	민간전용 활주로	제27조	신공항건설사업에	제38조	통합신공항 건설

구 분	제정안		가덕도신공항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조 문	규정사항	조 문	규정사항	조 문	규정사항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다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32조	업무방해 죄	제28조	업무방해 죄	제39조	업무방해 죄
	제33조	제지·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29조	제지·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40조	제지·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34조	양벌규정	제30조	양벌규정	제41조	양벌규정

2. 총괄 검토의견

청주국제공항은 이용여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군 겸용 공항으로 두 개의 활주로 중 하나의 활주로만을 군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 2035년 주요시간대 민간항공기 슬롯이 포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별도의 민간항공기 전용활주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³⁾

【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운영분석 】



자료 :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국회토론회 (2025.2.19.) 자료집

제정안은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청주국제공항에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급증하는 항공수요를 소화하고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취지를 담고 있음.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특별법 제정을 통한 개별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이하 “SOC”) 건설사업 추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의 건설·확장은 항공수요 대비 현재 시설의 포화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국 15개 공항의 기능·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항시설인 활주로 건설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개별 SOC 사업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한 사례와 비교 검토가 필요해 보임. 개별 SOC에 대한 특별법으로는 제정안의 입법 모델인 「가덕도신공항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⁴⁾ 등이 있음.

청주국제공항의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에 대해서도 앞선 두 법률과 유사한 방식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현행 공항건설 및 확장을 위

3)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국회토론회(2025.2.19.)

4) 참고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 지역을 둘러싼 국가적·사회적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공항 건설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대구광역시 도심에 자리한 군 공항의 소음발생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고 군 공항 및 민간 공항 이전, 이전주변지역 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 여러 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바 있음.

한 법 체계와는 다른 별도의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 밖에 군비행장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및 운영에 따른 군 작전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종합적으로 볼 때,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있어 특별법 제정이 갖는 효과, 개별 SOC 건설사업에 대한 특별법 제정 방식의 적절성, 다른 특별법 제정 사례, 군 작전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제정안의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3. 관계기관 의견

가. 국토교통부

공항시설의 확장은 항공수요 대비 현재 시설의 포화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국 공항의 기능·역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은 공항개발 종합계획 등 국가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특정 공항시설인 활주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사례는 없으며, 입법보다는 「공항시설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검토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에 따른 공항수용능력 확대 효과 외에 항공수요 및 항공사 취항 가능성, 경제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선은 민항기 운항비율 및 슬롯 확대 등을 통해 항공수요에 대응해 나가고, 이후 수요추이 등을 보아가며 활주로 신설 등 공항수용능력의 물리적 확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국방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민군 겸용 활주로 1본 외 군비행장(청주기지) 활주로와 분리된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 ① 청주기지 인근 군공역(비행제한구역, 훈련공역)과의 충돌, ② 헬기 시계비행절차와 공역 분리, ③ 군·민 활주로 독자 또는 통합 운영 여부와 이에 따른 상호 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 시 안전확보 방안과 군 작전 영향성, ④ 민간전용 활주로 주변 개발에 따른 비행 안전 확보 및 기존 군비행장(청주기지) 비행안전구역 침범 방지와 군 작전 영향성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함.

특별법에 따르면, 청주기지 비행안전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내의 민간 전용 활주로 관련 시설에 대한 인·허가 이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방부는 공군(관할부대)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청주기지는 핵심 전략자산을 비롯한 다양한 전력이

운영되는 공군의 전술항공작전기지로, 전·평시 기능 발휘를 위해서는 작전성 검토가 필수적인 사항이며, 위의 협의 과정이 충실히 진행되기 위한 실질적 보장이 병행되어야 함.

4. 조문별 검토

가. 목적, 정의 및 기본방향(안 제1조 ~ 제3조)

제정안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로서 「항공사업법」 제7조, 제10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기타 자가용 항공기를 말한다. 2.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이하 “민간전용 활주로”라 한다)란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간 비행장 사용협정」에 따른 군비행장(국방부 관할하의 비행장을 말한다)과 분리되어 민간항공기가 전용하는 활주로를 말한다. 3. “민간항공기 전용시설”이란 민간항공기가 군비행장과 분리되어 이용하는 민간전용 활주로, 계류장, 여객청사, 화물청사, 주차장 등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이 구비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한 민간의 단체 또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중 민간전용 활주로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나.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를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 등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도로 등의 건설, 공항이용객 및 항공관련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항공화물유통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조성 다.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주변지역”이란 민간전용 활주로는 건설될 부지가 소재한 지역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연접지역을 말한다. 6.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시행자와 민간전용 활주로는 건설될 부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민간전용 활주로를 건설하여야 한다. 1. 군비행장 활주로와 분리된 민간전용 활주로 운영과 중·장거리 및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운영

제정안
2. 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민간전용 활주로의 신속한 건설
3. 수도권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중부권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안 제1조는 목적 조항으로 이 법의 제정 목적을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사업의 기본방향, 사업의 시행자,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인·허가 의제 및 이를 지원하는 추진단, 재정지원,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목적조항에서 이러한 제정안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음.

안 제2조는 정의 조항으로 민간항공기,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민간항공기 전용시설, 민전용 활주로 건설사업,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주변지역과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먼저, ① 민간항공기의 정의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 국적 항공사의 경우 자국 항공당국에 대해서 등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 국적 항공사의 항공기가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음, ②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의 정의의 경우 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민간항공기가 전용하는 활주로로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제정안은 ③ 민간항공기 전용시설을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제정안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라는 점에서 별도로 정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④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경우 제정안의 목적이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이 청주국제공항에 대하여 추진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⑤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주변지역과 ⑥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대구경북신공항법」⁵⁾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⁶⁾에 따른 이전주변지역과 이전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5)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31.>

7. “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및 경상북도 의성군 지역을 말한다.

8.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연결한 소음피해지역 시·군·구 중 제20조의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8.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이전주변지역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피해를 감안하여 규정된 것으로 일반적인 공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없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안 제3조는 기본방향 조항으로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시 구현해야 할 특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데, 대개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⁷⁾과 유사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제1호의 “중·장거리 및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다소 모호한 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7)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조(기본방향)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1.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2. 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
3. 수도권에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
4. 종전부지 개발을 통한 관광·상업·산업 등의 기능이 활성화된 도시 조성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또한, 국가에 대해서는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동안 활주로를 비롯한 에어사이드(Airside)는 국가가 건설하였다는 점에서 재원부담의 주체인 국가가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계획과의 관계(안 제5조 및 제6조)

제정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에 따르며,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을 포함한 공항개발로 본다.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4.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안 제5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을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의 취지가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항으로 보임.

안 제6조는 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그 예외로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

개발 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과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둠으로써 해당 계획이 상위 법정계획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구경북신공항법」⁸⁾도 제정안과 유사함.

다만, 제정안은 우선하지 않는 법정계획을 단서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우선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임.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제정 당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이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되었던 사항으로, 법률 제정 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이 계획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부합한 것으로서 법 적용시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

그런데,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경우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법률이 제정되어 실시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이 계획이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법에 따른 계획이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우선하지 않도록 규정할 경우 이 법에 따른 계획의 효력이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4.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라.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안 제7조)

제정안
제2장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및 지원 등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⁹⁾

제정안은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자체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점¹⁰⁾,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사업

9)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 10)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에 따를 때 철도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에는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제성 평가 등 비용 편익 분석 결과 등에 쟁점사항이 발생하거나, 부처간 이견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1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예비타당성 운용지침」

제39조(예비타당성조사 기간)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 18개월(철도부문 24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

추진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지연 및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국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법보다는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법률로써 특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규정하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형해화를 초래하고 유사사례 등으로 법제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에 대한 입법례로서 「가덕도신공항법」 11),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12),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1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14) 등이 있음.¹⁵⁾

1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1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13)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1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3.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참고로, 예비타당성조사의 기간 단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입법례도 있는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해당 사례임. 각 법률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마. 시행자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안 제8조 및 제9조)

제정안
제8조(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공항시설법」에 따른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제8조에 따른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수립·승인·고시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안 제8조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시행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규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공항시설법」 16) 상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 규정과 유사하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17)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16) 「공항시설법」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의 개량 등에 관한 개발사업 중 일상적인 유지·보수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해당 개발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해당 개발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시설(공항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17)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안 제9조제1항은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수립·승인·고시에 대해서는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9조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이미 규정된 사항으로 안 제9조제1항에 따라 이미 준용되는 내용이라는 점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18)도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고시에 관한 절차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다.

② 제8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항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수립·승인·고시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 시설사업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 본다.

「환경영향평가법」 19)에서는 공항의 건설사업을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3²⁰⁾에서 공항개발사업 중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을 공항의 건설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 제9조제3항에서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공항개발사업, 즉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항의 건설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항시설법」이 아닌 별도의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생각됨.

19)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8. 공항의 건설사업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공항 또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육상비행장의 신설 2)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전

바. 인허가등의 의제(안 제10조)

제정안

제10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및 점용·사용 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과의 협의 또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1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임목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

제정안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9.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2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4.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및 신고 또는 협의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의 고시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실시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안 제10조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인·허가 의제란 하나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허가, 인가, 특허, 신고, 등록, 지정 등 관련되는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제정안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는 「공항시설법」 및 「가덕도신공항법」 21)과 유사하나,

2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 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 10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 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권자와의 협의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점용 ·사용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과의 협의 또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 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 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 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 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1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 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 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 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9.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 른 산지전용신고
2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의 허가 또는 신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는 청주국제공항이 내륙에 위치함에 따라 해당 인·허가의 의제가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한편, 인·허가 의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의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관리계획 의제와 관련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중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한정하여 의제할 필요가 있고, 도시공원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청주국제공항 인근에 도시공원이 입지하고 있지 않아 그 필요성이 없고, 도시공원의 휴식공간기능을 고려할 때 의제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
21.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2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
 28.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의 허가 또는 신고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실시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환경부는 공항은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를 의제 대상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산림청은 인·허가 의제 조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토석채취허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따라서 인·허가 의제 대상의 범위는 유사 입법례인 「가덕도신공항법」, 공항 건설의 기본법인 「공항시설법」²²⁾의 인·허가 의제 조항,

22) 「공항시설법」

제8조(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및 점용·사용 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과의 협의 또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청주국제공항의 특성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1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임목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8.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19.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2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21.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 23의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및 신고 또는 협의
 2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
 2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8.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의 허가 또는 신고
 2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사. 주변개발예정지역(안 제11조)

제정안
제11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1조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예정지역 경계의 10킬로미터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하고 주변지역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과거 인천국제공항 개발 당시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²³⁾을 통해 영종도 일대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해 개발한 사례가 있는데, 「가덕도신공항법」²⁴⁾에서 이를 참조하여 규정하였음.

2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법률 제13433호, 2015.7.24., 타법개정]

제16조의2(주변지역개발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의 범위 및 지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 및 무의동 일원과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시도리·모도리 및 장봉리 일원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한다.

2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주변지역개발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양식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²⁵⁾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에 관해 규정하였는데, 같은 법의 경우에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건설된다는 점에서 그 범위를 「가덕도신공항법」과 달리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예정지역과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규정하였음.

제정안의 경우 공항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예정지역 경계의 10킬로미터 범위를 기준으로 규정하였음.

25)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예정지역
2.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 주변지역지원사업(안 제12조)

제정안
제12조(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제8조에 따른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2.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사업 3. 공항과 연계되는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 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른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시행자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 택지의 조성 등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충청북도지사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주변지역을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충청북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안 제12조제1항은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사업, 공항과 연계되는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 및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하여 ①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대구경북신공항법」 26)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7)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전주변지역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따른 피해를 감안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일반적인 공항개

26)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경우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중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7)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연결한 소음피해지역 시·군·구 중 제20조의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8.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발사업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② 공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사업의 경우, 「공항시설법」²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활주로 등 에어사이드(Airside)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만일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투자허가가 필요한지 여부가 다소 불명확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안 제12조제2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²⁹⁾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28) 「공항시설법」

제21조(투자허가·시설물의 귀속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그 밖의 시설(공항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2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

하고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먼저, 이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³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조항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나, 민간 공항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이처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하도록 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그리고 이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주변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안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문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안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은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주변지역을 각종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전용 활주로나 신설된 공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관광 등의 기능이 복합된 경제권을 육성하여 공항이 지역의 성장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공항 주변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입법례를 찾기

으로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어려운 점, 공항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매수를 공항 소음대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따르지 않고, 관광특구를 지정하도록 하는 경우 외래관광객 유치의 목적으로하는 관광특구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자. 추진단 및 협의기구(안 제13조 및 제14조)

제정안
제13조(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추진단) ①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민간전용활주로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법인·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①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3조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추진·관리를 위한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추진단 구성·운영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14조는 청주국제공항은 군과 함께 활주로를 공유하는 공항으로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의기구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하는 것임.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³¹⁾ 제12조 및 제13조도 대구경북통합신공

3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법인·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①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추진단’과 같은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의 합리적·통일적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 법률에 정부조직에 관한 사항인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추진단’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국토교통부도 정부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 관계 법령에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며, 특정 공항에 국한된 활주로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설치는 형평성 문제 제기 등 지역 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만, 「가덕도신공항법」³²⁾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³³⁾과 같이 별도의 추진단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그 근거를 규정한 입법례도 존재함.

32)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신공항 건립추진단) ①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법인·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추진단의 설립 근거를 개별법에 해당하는 이
법률에 규정할지 또는 행정안전부의 의견과 같이 필요 시 「국토교통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그 근거를 둘 것인지 여부는 법령
체계 및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 정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차. 재정 지원 및 부담금 감면(안 제15조 및 제16조)

제정안
제3장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위한 지원 제15조(재정 지원) 국가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6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제15조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안 제16조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먼저, 재정 지원 조항과 관련하여 「공항시설법」³⁴⁾은 공항이 국가기간시설임을 감안하여 공항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가덕도신공항법」³⁵⁾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³⁶⁾도 재정 지원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4) 「공항시설법」

제2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35)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재정 지원) 국가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36)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정부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그리고 부담금 등의 감면 조항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부담금 감면 대상·기준은 각 부담금별 소관부처가 부담금 부과목적 및 취지, 타 지역 및 사업과의 형평성, 감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근거법령에서 규정해야 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도 소관 부담금인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해서 그 감면은 각 근거법령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타 법령에서 부담금 감면을 규정하는 것은 부담금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가덕도신공항법」³⁷⁾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³⁸⁾은 부담금 감면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37)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중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카. 민간자본 유치 및 지원(안 제17조 및 제18조)

제정안
제17조(민간자본 유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18조(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 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정안은 제17조에서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간투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도로, 철도 등 경제활동기반시설, 유치원, 학교 등 사회서비스제공시설, 공공청사, 보훈시설 등 공공용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한편, 안 제1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 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의 증대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로 공공재의 공급을 공공부문이 전담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자본 유치를 통하여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도 원활한 자금조달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가덕도신공항법」³⁹⁾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⁴⁰⁾에서도 이러한 민간자본의 유치 및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문을 규정하고 있음.

39)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민간자본 유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40)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민간자본 유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17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민간자본 유치)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23조(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타. 지역기업의 우대 및 지역주민의 우선고용(안 제19조 및 제20조)

제정안
제19조(지역기업의 우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20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안 제19조는 사업시행자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가덕도신공항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41)의 경우에도 지역기업의 우대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조문에 대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있고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주된 영업소가 해당 지역과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기회를 박탈당할 우려가

4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지역기업의 우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중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리고 안 제20조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 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규정의 경우 주로 군 공항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같은 기피시설이 설치되거나 이전됨에 따라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⁴²⁾으로 보임.

관련하여 군 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은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조문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덕도신공항법」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한편, 이를 규정하는 경우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은 이전과 관계없으므로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이라는 표현은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4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처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및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1조의5(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예정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파. 특례(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정안
제21조(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항시설법」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제22조(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23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안 제8조제2항⁴³⁾은 실시계획 수립·승인·고시에 관한 절차를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안 제5조제2항⁴⁴⁾은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 중 공항 개발사업 추진 시 「공항시설법」 제7조⁴⁵⁾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이 필

43) 제정안 제9조(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② 제8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항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수립·승인·고시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다.

44) 제정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에 따르며,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을 포함한 공항개발로 본다.

45) 「공항시설법」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실시계획이 변경되어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요한 “실시계획 수립·승인 시” 토지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사실을 소유자·권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같은 법 제12조⁴⁶⁾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승인과 이에 관한 고시가 있을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신청은 「토지보상법」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음.

안 제21조는 이처럼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 및 그 고시 시 발생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 의제효과를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때 발생하도록 하고,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재결 신청을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도록 하여, 조기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46) 「공항시설법」

제12조(토지등의 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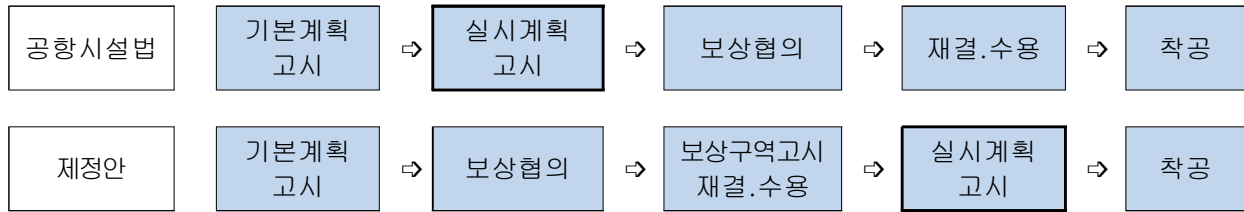
②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과 이에 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공항시설법」 및 제정안에 따른 추진절차 비교 】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토지보상 절차 등이 앞당겨지는 경우 소유자 미동의에 따른 보상율의 저조 문제 해결, 보상의 장기화 방지, 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가덕도신공항법」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⁴⁷⁾도 이와

47)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이 경우 편입되는 토지등(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제8조의2 및 제10조에서 같다)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의2(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2(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등(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항시설법」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항개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유사하게 기본계획 고시 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안 제21조제1항은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안 제5조제2항⁴⁸⁾에 따르면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실시계획 단계임.

따라서 법체계적 정합성을 위하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과 같이 기본계획 단계에서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고시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때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의 의제를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의 별표에 제정안에 따른 제정법률이 추가되어야 하므로, 「토지보상법」 별표 개정⁴⁹⁾이 필요할 것인데, 「토지보상법」 제4조의²⁵⁰⁾는 이와 같은 특

48) 제정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에 따르며,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을 포함한 공항개발로 본다.

49)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로 그 밖에 별표에 규

례를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별도로 심사되어야 할 것임⁵¹⁾.

다음으로, 안 제22조는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로서, 민간전용 활용 주로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⁵²⁾ 산업단지 전환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현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도 산업단지 전환이 가능한 측면이 있으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⁵³⁾에도 같은 특례가 규정되어 있음.

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50)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51) 본 제정안 상 특례 관련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은 상태임.

5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산업단지의 전환)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공 후 경과년도나 유치업종 변경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종류의 전환(이하 “산업단지전환”이라 한다)은 전환된 산업단지와 잔여 산업단지(기존 산업단지의 일부 지역을 산업단지전환하는 경우 남은 산업단지를 말한다)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거나 종전 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시일에 산업단지가 전환된 것으로 보며, 제3항에 따라 새로 수립된 실시계획은 전환 전의 실시계획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단지전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안 제23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인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별표3]⁵⁴⁾에서는 체육시설 설치 및 부지면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에 대한 특례를 통하여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 골프연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가덕도신공항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⁵⁵⁾에도 이미 동일한 내용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음.

제28조(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따른다.

5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시설 기준 등)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 면적의 제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 면적의 제한 사항(제8조 관련)

1. 시설물 설치의 제한 사항

골프장 안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물(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가. ~ 다. (생략)

2. 부지면적의 제한 사항

업종	제한내용
나. 골프연습장업(실외 골프연습장업만 해당한다)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골프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골프코스 1홀마다 1만3천 제곱미터를 추가할 수 있고, 피칭 및 퍼팅 연습용 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추가할 수 있다.

55)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공항건설예정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골프장의 경우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환경, 교통, 주민 생활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임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종합적인 검토 후 승인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례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혜 시비 등 논란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하. 보칙(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제정안
제4장 보칙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출입·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3.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7조(허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민간활주로 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26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게 제26조에 따라 사업의 시

제정안

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승인의 효력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먼저, 안 제24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효율적인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공항시설법」 및 「가덕도신공항법」⁵⁶⁾ 상 권한의 위임 규정의 경우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재 활주로의 경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인 지방항공청장이 건설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정안에 따른 권한 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임.

56) 「공항시설법」

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안 제25조는 통상적인 감독 규정으로서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출입을 통한 업무 검사 등을 규정하는 조항임.

이는 행정조사에 관한 내용으로서, 행정조사의 구체적인 조사절차 등은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르더라도 조사의 주체,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등을 포함한 실시근거는 개별법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⁵⁷⁾이므로, 이에 따른 것으로 보임.

57) 「공항시설법」

제55조(출입·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등,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출입·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2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에게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군 공항 이전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8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제정안은 안 제26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승인된 실시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항시설법」, 「가덕도신공항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⁵⁸⁾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다음, 안 제27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

58) 「공항시설법」

제57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등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해당 시설을 시설관리기준 또는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3. 공항시설·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이 시설관리기준 또는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한 경우
4.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3.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3.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획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효력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⁵⁹⁾

이는 사업시행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등을 명하여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안 제28조에서는 과징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바, 과징금 제도란 ① 행정상 의무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거나 ② 영업정지

59)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허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제10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신공항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4조(허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3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처분 등을 갈음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상의 제재를 일컫는데⁶⁰⁾, 제정안에 따른 과징금은 안 제27조에 따른 승인 취소 등이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후자 성격의 과징금임.

이는 공항의 기반시설로서의 공공성과 「공항시설법」 제59조(과징금의 부과)⁶¹⁾를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가덕도신공항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⁶²⁾도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60) 법제이론과 실제, 국회사무처, 2019, p.422

61) 「공항시설법」

제59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항행안전시설설치자에게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항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거나 제5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승인의 효력 정지,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62)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4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승인의 효력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5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제34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승인의 효력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마지막으로, 안 제29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안 제2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불이익한 처분 전에 처분 당사자에게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보임.

「행정절차법」 제22조⁶³⁾에서도 인허가 등의 취소를 하는 경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가덕도신공항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⁶⁴⁾에서도 청문 규정을 두고 있음.

63)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6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거. 벌칙 및 부칙(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정안
제5장 벌칙 제30조(명령 등의 위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 제31조(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자 2.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4. 제2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사용한 자 제32조(업무방해 죄) 제25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제지·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경우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항시설법」에 따라 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안 제30조부터 제33조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의 내용 중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공항시설법」 상의 벌칙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해석상 논란을 피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법에서 별도로 벌칙 적용에 관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공항시설법」 제65조(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66조(명령 등의 위반 죄), 제67조(업무방해 죄), 제67조의2(제지·퇴거 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⁶⁵⁾는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65) 「공항시설법」

제65조(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0조제7항 또는 제45조제5항(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자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5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사용한 자

제66조(명령 등의 위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제5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3. 제25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7조 및 제58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

제67조(업무방해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5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

제67조의2(제지·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과정에서도 해당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가덕도신공항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⁶⁶⁾의 경우에도 「공항시설법」을 고려하여 벌칙 대상과 그 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안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공항시설법」 제68조(양벌규정)⁶⁷⁾와 같이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규정된 위반한 행위를 하면

66)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명령 등의 위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

제3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자
2.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4. 제34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사용한 자

제39조(업무방해 죄)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제지·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경우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를 따른다.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7) 「공항시설법」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및 제6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바, 안 제34조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580